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22 호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 방 방 재 청 장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8)
粉末消火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108)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분말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水噴霧等消火設備である粉末消火設備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5 호의 규정에 따른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圍)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星印 4 消火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5 号の規定による粉末消火設備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1. “全域放出方式”とは、固定式粉末消火薬剤供給装置に配管および噴射ヘッドを固定設置して密閉部屋防護領域内に粉末消火薬剤を放出する設備をいう。
2.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局所放出方式”とは、固定式粉末消火薬剤供給装置に配管および噴射ヘッドを設置して直接的に粉末消火薬剤を放出する設備で火災発生の部分にだけ集中的に消火薬剤を放出するように設置する方式をいう。
3. “호스릴방식”이라 함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3. “ホースリール方式”とは、噴射ヘッドが配管に固定されていないで、消火薬剤貯蔵容器にホースを連結して、人が直接的に消火薬剤を放出する移動式消火設備をいう。
4. “충전비”라 함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4. “充填比”とは、容器の容積と消火薬剤の重量との比率をいう。

5. “집합관”이라 함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되는 관을 말한다.

5. “集合管”とは、粉末消火設備の加圧用ガス(窒素または二酸化炭素)と粉末消火薬劑が混ざり合う管をいう。

6. “교차회로방식”이라 함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6. “交差回路方式”とは、1の防護区域内に2以上の火災感知器回路を設置して、2以上の火災感知器が同時に感知される時には、粉末消火設備が作動して消火薬劑が放出される方式をいう。

7.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 64 조의 규정에 따른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8. “防火戸”とは、建築法施行令第 64 条の規定による甲種防火戸または乙種防火戸でいつも閉じられた状態を維持したり、火災による煙の発生または温度の上昇により自動的に閉じられる構造をいう。

제 4 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第 4 条(貯藏容器) ① 粉末消火薬劑の貯藏容器は、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した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성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防護区域外の場所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防護区域内に設置する場合には、避難および操作が容易なように避難口付近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 .温度が40℃以下で、温度変化が少ないところに設置すること。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

3. 直射光ではおよび雨水が浸透す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4. 防火戸で区切られた室に設置すること。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5. 容器の設置場所には当該容器が設置されたところであることを表示する表紙をすること。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6. 容器間の間隔は、点検に支障がないように3 cm以上の間隔を維持すること。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貯蔵容器と集合管を連結する連結配管には、チェックバルブ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貯蔵容器が一つの防護区域だけを担当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粉末消火薬劑の貯蔵容器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1. 貯蔵容器の内容積は、次表に従うこと。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 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消火薬劑 1 kg 当たり貯蔵容器の内容積
제 1 종 분말(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第 1 種粉末(炭酸水素ナトリウムを主成分にした粉末)	0.8ℓ
제 2 종 분말(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1ℓ
제 3 종 분말(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1ℓ
제 4 종 분말(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	1.25ℓ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 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 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2. 貯蔵容器には、加圧式のものにおいては最高使用圧力の 1.8 倍以下、蓄圧式のものにおいては容器の耐圧試験圧力の 0.8 倍以下の圧力で作動する安全バルブを設置すること。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3. 貯蔵容器には、貯蔵容器の内部圧力が設定圧力になった時、主バルブを開放する定圧作動装置を設置すること。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4. 貯蔵容器の充填比は、0.8 以上とすること。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5. 貯蔵容器および配管には、残留消火薬劑を処理できる清掃装置を設置すること。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6. 蓄圧式の粉末消火設備は、使用圧力の範囲を表示した指示圧力計を設置すること。

제 5 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第 5 条(加圧用ガス容器) ① 粉末消火薬劑のガス容器は、粉末消火薬劑の貯蔵容器に接続して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 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 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粉末消火薬劑の加圧用ガス容器を 3 本以上設置した場合においては、2 個以上の容器に電子開放バルブを取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여야 한다.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

③ 粉末消火薬剂の加圧用ガス容器には、2.5MPa以下の圧力で調整が可能な圧力調整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加圧用ガスまたは蓄圧用ガス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1. 加圧用ガスまたは蓄圧用ガスは、窒素ガスまたは二酸化炭素とすること。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 40ℓ(35℃에서 1
다

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 加圧用ガスに窒素ガスを使うものにあつての窒素ガスは、消火薬剂 1kgごとに 40リットル(35℃で 1気圧の圧力状態で換算したもの)以上、二酸化炭素を使うものにあつての二酸化炭素は、消火薬剂 1kgに対し 20gに配管の清掃に必要な量を加算した量以上とすること。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蓄圧用ガスに窒素ガスを使うものにあつての窒素ガスは、消火薬剂 1kgに対し 10リットル(35℃で 1気圧の圧力状態で換算したもの)以上、二酸化炭素を使うものにあつての二酸化炭素は、消火薬剂 1kgに対し 20gに配管の清掃に必要な量を加算した量以上とすること。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4. 配管の清掃に必要な量のガスは、別途の容器に貯蔵すること。

제 6 조(소화약 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 1 종분말 • 제 2 종분말 • 제 3 종분말 또는 제 4 종분말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 3 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第 6 条(消火薬剂) ① 粉末消火設備に使う消火薬剂は、第 1 種粉末、第 2 種粉末、第 3 種粉末または第 4 種粉末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車庫または駐車場に設置する粉末消火設備の消火薬剂は、第 3 種粉末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粉末消火薬剂の保貯蔵量は、次の各号の基準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同じ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 2 以上の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がある場合には、各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に対し、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算出した貯蔵量中、最大のものにできる。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 全域放出方式においては、次の基準により算出した量以上とすること。

가. 방호구역의 체적 1 m³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ア 防護区域の体積 1 m³に対し次表に従った量 (日本と同じ表)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 m³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제 1 종 분말	0.60
제 2 종 분말 또는 제 3 종 분말	0.36
제 4 종 분말	0.24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イ 防護区域の開口部に自動閉鎖装置を設置しない場合には、アにより算出した量に、次表により算出した量を加算した量 (日本と同じ表)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개구부의 면적 1 m²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제 1 종 분말	4.5
제 2 종 분말 또는 제 3 종 분말	2.7
제 4 종 분말	1.8

2.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 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2. 局所放出方式においては、次の基準により算出した量に 1.1 をかけて得た量以上とすること。

(日本と同じ表)

$$Q = X - Y a/A$$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m³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m³)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m²)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m²)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제 1 종 분말	5.2	3.9
제 2 종 분말 또는	3.2	2.4
제 3 종분말 제 4 종 분말	2.0	1.5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3. ホースリール粉末消火設備においては、一つのノズルに対して次表に従った量以上とすること。
(日本と同じ表)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제 1 종 분말	50
제 2 종 분말 또는 제 3 종 분말	30
제 4 종 분말	20

제 7 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 7 条(起動装置) ① 粉末消火設備の手動式起動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手動式起動装置の付近には、消火薬剤の放出を遅延させることができる非常スイッチ(自動復帰型スイッチとして手動式起動装置のタイマーを瞬間停止させる機能のスイッチをいう。)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1. 全域放出方式においては防護区域ごとに、局所放出方式においては防護対象物ごとに設置すること。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当該防護区域の出入口の部分など操作をする者が簡単に避難できる場所に設置すること。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起動装置の操作部は、床から高さ 0.8m 以上 1.5m 以下の位置に設置して、保護板などによる保護装置を設置すること。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起動装置には、その近いところの見え易いところに"粉末消火設備起動装置"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5. 電気を使う起動装置には、電源表示灯を設置すること。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起動装置の放出用スイッチは、音響警報装置と連動して操作されることが出来るものとする。
-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粉末消火設備の自動式起動装置は、自動火災報知設備の感知器の作動と連動するものとして、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 自動式起動装置には、手動でも起動できる構造とすること。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2. 電気式起動装置として7本以上の貯蔵容器を同時に開放する設備においては、2本以上の貯蔵容器に電子開放バルブを取り付けること。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3. ガス圧力式起動装置は、次の基準に従うこと。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ア 起動用ガス容器および当該容器に使うバルブは、25MPa以上の圧力に耐え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こと。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 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イ 起動用ガス容器には、耐圧試験圧力の0.8倍ないし耐圧試験圧力以下で作動する安全装置を設置すること。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kg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ウ 起動用ガス容器の容積は、1リットル以上として、当該容器に貯蔵する二酸化炭素の量は、0.6 kg以上として、充填比は1.5以上とすること。

4. 기계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機械式起動装置においては、貯蔵容器を簡単に開放できる構造とすること。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粉末消火設備が設置された部分の出入口などの見え易いところに消火薬剤の放射を表示する表示灯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8 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8 条(制御盤等) 粉末消火設備の制御盤および火災表示盤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自動火災報知設備の受信機の制御盤が火災表示盤の機能を有しているものにおいては火災表示盤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1. 制御盤は、手動起動装置または感知器での信号を受信して音響警報装置の作動、消火薬剤の放出または遅延その他の制御機能を有したものとして、制御盤には、電源表示灯を設置すること。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火災表示盤は、制御盤での信号を受信して、作動する機能を有したものであるもの、次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ア 各防護区域ごとに音響警報装置の操作および感知器の作動を明示する表示灯と、これと連動して作動するベル、ブザーなどの警報機を設置すること。この場合、音響警報装置の操作および感知器の作動を明示する表示灯を兼用することができる。

나.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イ 手動式起動装置においては、その放出用スイッチの作動を明示する表示灯を設置すること。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ウ 消火薬剤の放出を明示する表示灯を設置すること。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エ 自動式起動装置においては、自動、手動の切り替えを明示する表示灯を設置すること。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制御盤および火災表示盤の設置場所は、火災による影響、振動および衝撃による影響および腐食の憂慮がなく点検に便利な場所に設置すること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4. 制御盤および火災表示盤には、当該回路図および取り扱い説明書を備えつけること。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9条(配管など) ① 粉末消火設備の配管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1. 配管は専用ですること。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에서 압력이 2.5MPa 이상 4.2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 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鋼管を使う場合の配管は、亜鉛メッキによる配管用炭素鋼管(KS D 3507)で、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耐食性および耐熱性を持ったものとする。ただし、蓄圧式粉末消火設備に使うもの

のうち、20℃ で、圧力が 2.5MPa 以上 4.2MPa 以下であるものにおいては、圧力配管用炭素鋼管(KS D 3562)中、継ぎ目のないスケジュール 40 以上のものまたは、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を持ったものとして、亜鉛メッキで防食処理されたもの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 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銅管を使う場合の配管は、固定圧力または最高使用圧力の 1.5 倍以上の圧力に耐えることができるのを使うこと。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4. バルブ類は、開閉位置または開閉方向を表示したものとすること。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配管の管継手およびバルブ類は、配管と同等以上の強度および耐食性があるものとすること。

제 10 조(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분말소

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0 条(選択バルブ) 一つの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 2 以上の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があつて粉末消火設備貯蔵容器を共用する場合に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選択バルブ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1. 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ごとに設置すること。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2. 各選択バルブには、その担当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を表示すること。

제 11 조(분사헤드) 다.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1 条(噴射ヘッド) ① 全域放出方式の粉末消火設備の噴射ヘッド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1. 放射された消火薬劑が防護区域の全域に均一に迅速に拡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2.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第 6 条の規定による消火薬劑貯蔵量を 30 秒以内に放射できるものとする。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局所放出方式の粉末消火設備の噴射ヘッド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1. 消火薬劑の放射により可燃物が飛散し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2.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第 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基準貯蔵量の消火薬劑を 30 秒以内に放射できるものとする。

③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火災時顕著に煙が溜まる憂慮がない場所として、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所にはホースリール粉末消火設備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지상 1 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1. 地上 1 階および避難階にある部分として地上で手動または遠隔操作により開放できる開口部の有効面積の合計が床面積の 15%以上になる部分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2. 電気設備が設置されている部分または多量の火気を使う部分(当てられて設備の周囲 5m 以内の部分を含む。)の底面積が当該設備が設置されている区画の底面積の 5 分の 1 未満となっている部分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ホースリール粉末消火設備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 防護対象物の各部分から一つのホース 接続口までの水平距離が 15m 以下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消火薬劑の貯蔵容器の開放バルブは、ホースリールの設置場所で手動で開閉できるものとする。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3. 消火薬剤の貯蔵容器は、ホースリールを設置する場所ごとに設置すること。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ノズルは、一つのノズルごとに1分間の次表による消火薬剤を放射できることにすること。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제 1 종 분말	45
제 2 종 분말 또는 제 3 종 분말	27
제 4 종 분말	18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貯蔵容器には、その近いところの見易いところに赤色の表示灯を設置して、移動式粉末消火設備があるという旨を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제 12 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2 条(自動式起動装置の火災感知器) 粉末消火設備の自動式起動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る火災感知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1. 各防護区域内の火災感知器の感知により作動するようにすること。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 조제 1 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火災感知器の回路は、交差回路方式で設置すること。ただし、火災感知器を自動火災報知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203)第 7 条第 1 項ただし書の各号の感知器で設置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 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 조제 3 항제 5 호·제 8 호 내지 제 10 호의 규정에 따른 할 것
바닥면적으로

3. 交差回路内の各火災感知器回路別に設置された火災感知器 1 個が担当する床面積は、自動火災報知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203)第 7 条第 3 項第 5 号、第 8 号ないし第 10 号の規定による底面積とすること。

제 13 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3 条(音響警報装置) ① 粉末消火設備の音響警報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1. 手動式起動装置を設置したものにおいては、その起動装置の操作過程で、自動式起動装置を設置したものにおいては、火災感知器と連動して自動で警報を発するものすること。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消火薬剤の放射開始後 1 分以上警報を継続できるものとする。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がある区画の中にある者に有効に警報できることにすること。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放送による警報装置を設置する場合には、次の各号の基準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1. 増幅器再生装置は、火災時燃焼の憂慮がなく、維持管理が容易な場所に設置すること。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がある区画の各部分から一つの拡声器までの水平距離は、25m 以下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制御盤の復旧スイッチを操作しても警報をずっと発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제 14 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4 条(自動閉鎖装置) 全域放出方式の粉末消火設備を設置した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対し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自動閉鎖装置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 換気装置を設置したものにおいては、粉末が放射される前に当該換気装置が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 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2. 開口部があったり、天井から1m以上の下の部分または床から当該口の高さの3分の2以内の部分に通気口があって、粉末の流出により消火効果を減少させる恐れがあるものにあつては粉末が放射される前に当該開口部および通気口を閉鎖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3. 自動閉鎖装置は、防護区域または防護対象物がある区画の外で復旧できる構造にして、その位置を表示する表紙をすること。

제 15 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5 条(非常電源) 粉末消火設備の非常電源は、自家発電設備または蓄電池設備(制御盤に内蔵する場合を含む。)として、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点検に便利で火災および浸水などの災害による被害を受け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2. 粉末消火設備を有効に20分以上作動するべきであること。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常用電源から電力の供給が中断された時には、自動で非常電源から電力を供給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4. 非常電源の設置場所は、他の場所と防火区画すること。この場合、その場所には非常電源の供給に必要な機構や設備外のこと(熱併合発電設備に必要な機構や設備は除く。)を置いてはならない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非常電源を室内に設置する時には、その室内に非常照明灯を設置すること。

제 16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6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増設、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粉末消火設備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困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内で二酸化炭素消火設備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